

---

## Policy and Law Report \_Vol.151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08.29.~ 2022.09.04.) -

September 5,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p>기획재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 <b>「제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b></p> <p>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화상회의로 「제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함</p> <p>*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ttee)는 중국의 거시·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수석 부처임</p> <p>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부총리 간 거시경제 동향과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경제분야 실질적 협력, 공급망·신산업 협력, 제3국 공동진출 협력, 서비스산업 협력, 탄소중립 정책교류를 주요 의제로 논의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거시경제 협력) 양국은 세계경제가 큰 변화와 팬데믹으로 엄중한 시기라는데 공감하며 세계 경제동력 회복 필요성에 대해 평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인 거시경제 분야 대화 및 교류 강화는 물론 G20 등 다자(多者)무대에서 관련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개방을 확대하여 양국 기업을 위해 더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함</li> </ul> </li> <li>② (경제분야 실질적 협력) 양국은 경제분야 실질적 협력을 위하여 글로벌 불확실성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정부(중앙-지방), 기업, 연구소 등 간에 교류 및 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은 자국의 정책 소개, 기업들 애로사항 청취, 지방도시간 협력, 기업 및 싱크탱크 교류 등이 포함된 “한중 경제협력 교류회”를 매년 공동 개최하기 위한 『경제분야 실질 협력 강화』 양해각서 공동 서명</li> </ul> </li> <li>③ (공급망·신산업 협력) 양국간 경제의 상호 보완성이 강하고 공급망이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데 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은 『공급망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로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향후 공급망 불안 같은 문제 발생시 관련 정책 의견을 교환하고 적시에 협력하며 이를 위한 ‘공급망 협력 조정 협의체(국장급)’ 신설 합의</li> <li>- 양국은 신성장 동력으로서 수소산업 등과 같은 신산업 발전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협력을 추진. 아울러 우리측은 기업들의 협력성과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환경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중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 당부</li> </ul> </li> <li>④ (제3국 공동진출 협력) 양국은 양국 기업간 제3국 공동진출 협력 사업을 재활성화하고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협력 범위 및 기관 확대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 협의</li> </ul> </li> </ul>	<p>2022-08-27</p>

부처	내용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 기업이 공동 진출해 사업 중인 모잠비크의 해상가스전(블록4) 중 Coral South 지역 FLNG(Floating LNG) 액화공정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 『제3국 공동진출 협력 중점 프로젝트』 양해각서 체결</li> <li style="padding-left: 20px;">* 한국 가스공사 및 중국 석유천연가스공사(CNPC)가 공동 투자해 ‘24년 상업운전 개시 예상</li> <li>⑤ (탄소중립 정책교류) 양측은 기존의 미세먼지 논의를 넘어 탄소중립 정책교류 강화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면서 서로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는 것이 공동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함</li> <li>- 적극적인 협력과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의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의 친환경·저탄소 개혁을 추진해나가며 국제사회에서 기후 및 환경 분야 공조도 확대해 나가기로 협의</li> <li>⑥ (서비스산업 협력) 양국은 서비스산업 발전 관련 경험 공유 강화, 과제 연구, 문화산업 심포지엄 등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여 양국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 동의</li> <li>- 우리측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은 물론 게임, 영상, 방송, 콘텐츠 등 문화 분야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li> <li>- 중국측은 건강, 노인 요양, 스포츠 등 생활서비스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제의</li> </ul>	

부처	내용	일시
<p>과학 기술정보 통신부</p>	<p>● <b>「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b></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확장가상세계 관련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확장가상세계 경제 활성화 민관 전담팀*’과 ‘확장가상세계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고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초안에 대해 논의함</p> <p>* 확장가상세계 산업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선결이슈를 공유하고 법제도 정비방안을 논의 **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확장가상세계 민관 협력체계</p> <p>&lt;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초안 개요 &gt;</p> <p><b>(3대 지향가치)</b> 확장가상세계가 사회 구성원의 창의적 역량을 지원하고 디지털 경제사회의 혁신에 기여하기 위해 <b>생태계 참여자가 개발·운영·이용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b></p> <p><b>(8대 실천원칙)</b> 생태계 참여자가 ‘3대 지향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b>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원칙</b></p>	<p>2022-08-26</p>
<p><b>책임성(Responsibility)</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한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노력</li> <li>개발과 운영 주체는 현 세대의 메타버스가 미래 세대의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li> <li>이용 주체는 가상공간 내 행위의 결과가 누적되어 미래 메타버스에 영향을 미침을 고려</li> </ul> <p><b>진정성(Authenticity)</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실한 자아의 발현</li> <li>개발 주체는 참여자의 진정성이 발현되는 도구 지원</li> <li>운영 주체는 진정성이 침해되는 경우 점검과 개선 노력</li> <li>이용 주체는 내면화한 가치와 행위가 정합한가 속도</li> </ul> <p><b>자율성(Autonomy)</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능동적·자발적 동기의 참여</li> <li>개발과 운영 주체는 참여와 행동의 선택권 보장</li> <li>이용 주체는 참여자의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과 함께 현실 자아의 자율성에 미칠 수 있음을 인식</li> </ul> <p><b>호혜성(Reciprocity)</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호적·협력적 상호작용의 발산</li> <li>개발과 운영 주체는 호혜적 소통을 지원하는 상호작용 방식 고안</li> <li>이용 주체는 소통에 있어 긍정적인 호혜성을 내재화하기 위해 노력</li> </ul> <p><b>사생활 존중(Respect for Privacy)</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상공간 내 사적 영역의 존중</li> <li>개발과 운영 주체는 상호작용 방식을 고안함에 있어 사적 영역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li> <li>이용 주체는 가상공간에서도 자신과 타인의 사적 영역이 존재함을 인식</li> </ul> <p><b>공정성(Fairnes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의적 역량 발휘의 기회</li> <li>개발과 운영 주체는 창작과 수익활동 참여의 차별없는 기회를 보장</li> <li>이용 주체는 창작과 수익활동 참여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침해 주의</li> </ul> <p><b>데이터 보호(Data Protectio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li> <li>개발과 운영 주체는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염두</li> <li>이용 주체는 자신의 부주의로 자신과 타인의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음을 인지</li> </ul> <p><b>포용성(Inclusio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성 존중과 접근성 증진</li> <li>개발과 운영 주체는 특정 집단이 배제되지 않도록 접근과 활용이 용이한 환경 조성</li> <li>이용 주체는 가상자아의 사회경제적 다양성을 인식하고 포용적 문화적 토대 구축 노력</li> </ul> <p><b>1.안전한 자아</b> <b>2.안전한 향유</b> <b>3.지속적 변형</b> <b>3대 지향가치</b></p>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p>• <b>수소차 셀프 충전 등 수소산업분야 19개 규제 개선</b></p> <p>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소안전 규제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임</p> <p>수소안전 분야 주요 규제혁신 내용은</p> <p>① <b>수소충전소 설치 방호벽 유형의 다양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충전소 밖의 보호시설(주택 등) 보호를 위한 방호벽의 경우 특정 유형(철근콘크리트제)의 방호벽만 허용</li> <li>⇒ (개선) 방호벽 강도가 동등한 경우, 다양한 유형*의 방호벽도 설치를 허용</li> <li>* 철근콘크리트제, 콘크리트블럭, 강판제</li> </ul> <p>② <b>수전해 설비 스택 특성을 고려한 검사기준 개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수전해 설비 내 핵심부품인 스택(Stack)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내구성 검증을 위해 파열시험 실시대상</li> <li>⇒ (검토) 파열시험 대신 컴퓨터시뮬레이션(전산구조응력해석) 등을 통해 스택의 내구성 검증하는 검사기술 및 기준 개발 추진</li> </ul> <p>③ <b>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페플라스틱 등 연료의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는 현행 「수소법」 하위 가스 기술기준 상 ‘수소추출설비*’ 범위에 미포함</li> <li>* 수소추출설비란 ①도시가스, ②액화석유가스, ③탄화수소, 메탄올/에탄올 등 알코올류 연료)로부터 수소를 추출하는 설비를 말함</li> <li>⇒ (개선) 다양한 수소생산설비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도 수소추출설비 범위에 포함하고 안전기준 마련</li> </ul> <p>④ <b>사업소 밖 LNG 배관 설치 및 안전기준 마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기체천연가스(NG) 배관과 달리 액화천연가스(LNG, -162도) 배관을 사업소밖에 설치하기 위한 안전기준 부재</li> <li>* 일부 민간기업은 액화수소 생산의 경제성 제고를 위해, 타 사업장(LNG터미널)에서 LNG를 공급받아 LNG 냉열을 활용을 추진 중인바, 이를 위해 사업소 밖에 LNG배관 설치 필요</li> <li>⇒ (개선) 액화수소 생산 및 LNG 냉열 활용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LNG 배관 설치 및 안전기준 마련 추진</li> </ul>	2022-08-29

부처	내용	일시
금융 감독원	<p>• 「<b>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b>」 개최</p> <p>금융감독원은 잭슨홀 미팅* 이후 美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과 관련하여,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함</p> <p>* 파월 美 연준 의장은 40년만에 최고치에 근접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강력한 연준의 도구를 사용할 것(use our tools forcefully)'이라고 발표</p> <p>** 다우존스 ↓ 3.03%, S&amp;P500 ↓ 3.37%, 나스닥 ↓ 3.94%</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국채 등을 활용하여 민간 차원에서의 외화조달이 더욱 용이하도록 적극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를 위해 금감원은 관련 거래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즉시 발급 (8/29 비조치의견서 발급 예정)</li> </ul> <p>② <b>‘공매도조사팀’을 금주내 신설,가동하여 불법공매도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처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공매도 조사 강화 뿐만 아니라, 공매도 시장 실태에 관한 감독 및 검사 역량을 집중하여 운영상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 지속</li> </ul> <p>③ <b>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은행의 자율적인 금리경쟁을 유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리상승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지원하고, 금융권의 자율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유도</li> </ul>	2022-08-29

##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행정 안전부	<p>• <b>「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b> (2022.08.31. 시행)</p> <p>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등 의료기관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미 건축이 완료된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를 위한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되는 등의 이유로 그 기한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설치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p>	2022-08-31
공정거래 위원회	<p>• <b>「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b> (2022.8.30. 시행)</p> <p>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미지급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한 대규모유통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기한 지연에 따른 이자를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그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p> <p>직매입거래*를 할 때에는 상품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지급기한을 정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p> <p>* 직매입거래: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스스로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p>	2022-08-30
금융 위원회	<p>• <b>「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b> (2022.8.30. 시행)</p> <p>「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당일 기준가격으로 판매 또는 환매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 활성화를 위해 외화로 표시된 단기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허용하며,</p> <p>집합투자기구의 적극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p>	2022-08-30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하기 위해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시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집합투자증권의 판매·환매 시 기준가격 조정 (제77조제1항제6호 및 제255조제1항제3호 신설, 제77조제2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예금에만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또는 환매할 때 종전에는 주로 금전 등의 납입일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에 산정되거나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판매 또는 환매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금전 등의 납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판매 또는 환매하도록 함</li> </ul> <p>② <b>외화로 표시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허용 (제8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제241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등의 외화 중 하나의 통화로 표시된 단기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허용함</li> <li>- 외화로 표시된 단기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해당 외화를 발행한 외국정부의 국채증권 등에 대해서는 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함</li> <li>- 외화로 표시된 단기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부실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개인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재산이 1천5백억원 이상, 법인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재산이 2천5백억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거나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를 위탁받지 못하도록 함</li> </ul> <p>③ <b>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 기준 완화 (현행 제88조제1항제3호 삭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투자업자가 적극적으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등의 경우에도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와 기준지표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함</li> </ul> <p>④ <b>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공시 의무 완화 (제118조의16제3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장외매매거래 대상이 되는 법인의 사업연도별 재무상태표 등 결산 관련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공시 의무 부담을 완화함</li> </ul>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⑤ <b>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추가 (제209조 및 제211조제2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을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 등으로 하여금 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수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함</li> <li>-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다른 집합투자기구 대비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새로운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함</li> </ul> <p>⑥ <b>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설명의무 강화 (제243조제3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예상투자기간 등을 고려한 예상 판매 수수료·보수와 수수료·보수별 차이점을 투자자에게 설명하도록 함</li> </ul>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p>• <b>「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b></p> <p>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을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889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함</p> <p>이에 따라, 수소발전 입찰시장 및 입찰시장 관리기관과 관련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소산업 진흥을 위한 수소의 날 지정 및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수소경제위원회 운영 보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수소발전 입찰시장의 수소발전량 구매자 및 구매량, 입찰시장 개설 및 낙찰자 선정기준, 수소발전량 계약, 입찰시장 개설물량, 구매이행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4조의20 부터 제34조의24까지)</li> <li>② 입찰시장 관리기관 지정기준, 수수료, 관리기관 지정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34조의25 부터 제34조의27까지)</li> <li>③ 수소에너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수소의 날 지정 및 행사개최,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6조의2)</li> <li>④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위원회 업무지원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7조)</li> </ul> <p>※ 의견 제시기간 : 8/31(수)~10/10(월)까지 <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산업통상자원부(수소경제정책과)</a>로 제출</p>	2022-08-31
	<p>• <b>「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b></p> <p>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을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889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함</p> <p>이에 따라,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 관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영지도사에 관한 인용 조문의 정비 및 수소시장 세부사항의 규정 형식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p>	2022-08-3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21년 4월 8일)되면서, 기존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던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에 관한 사항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 이에 수소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첨부서류란 「수소전문기업 확인요령」 제2조제2호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사”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로 개정 (안 제4조)</p> <p>② 수소법 개정안에 따른 위임사항 중 법 제25조의7제2항의 입찰시장 관리기관 운영규칙의 경미한 사항(착오, 오키(誤記), 누락 등) 변경에 대한 시행규칙 마련 (안 제9조의6)</p> <p>③ 수소시장 개설 및 운영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부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수소시장을 개설·운영하는 주체인 수소유통전담기관이 수소시장 운영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 (안 제17조)</p> <p>※ 의견 제시기간 :8/31(수)~10/10(월)까지 <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산업통상자원부(수소경제정책과)</a>로 제출</p>	
환경부	<p>• <b>「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p> <p>인체·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자원으로써 활용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완화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시행 중이나,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이 까다로워 등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해당 요건을 완화하여 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순환자원 인정요건 완화 (안 제3조)</b></p> <p>- 순환자원 인정요건을 현행 9개에서 2개*로 완화</p> <p>* 소각·매립 또는 해역으로 배출하려는 물질이 아닐 것,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p> <p>※ 의견 제시기간 :8/31(수)~10/11(화)까지 <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a>로 제출</p>	2022-08-3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국토 교통부</p>	<p>• <b>「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p> <p>중고자동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고자 중고자동차의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유형을 구체화하고,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감독 체계와 유사한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하였음</p> <p>이에, 법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중고자동차에 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의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고, 중고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규정하고자 함</p> <p>또한 자동차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고, 교환·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 18949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p> <p>이에 따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제작결함분과위원회”와 “중재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중고차 표시·광고 금지 유형에 매매가 불가능하거나 매매할 의사가 없는 중고차, 구매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은폐·축소를 규정 (안 제13조의2 신설)</li> <li>②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수탁기관으로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규정 (안 제14조의6 신설)</li> <li>③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위원회에 제작결함분과위원회 및 중재분과위원회 설치·운영 (안 9조의6 개정, 안 9조의7 신설, 안 9조의10 개정)</li> </ul> <p>※ 의견 제시기간 :8/29(월)~10/11(화)까지 <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a>로 제출</p>	<p>2022-08-29</p>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 <b>「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b></p> <p>자동차제작자 등이 제작결함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신문에 공고할 때 서울 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에만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쟁 제한적 규정을 개선하는 한편,</p> <p>자동차제작자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진행상황을 매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상 차량이 폐차, 수출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시정조치 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보고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또한 중고자동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고자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감독 체계와 유사한 중고자동차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하였음</p> <p>이에, 법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시정조치계획 등의 일간신문 공고 규정 개선 (안 제41조제2항, 제41조의2제1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일간신문에만 공고하도록 규정한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li> <li>- 주사무소 소재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li> </ul> <p>② <b>시정조치계획 보고 내용 개선 (안 제42조제1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조치 전용 작업공간 부족 등으로 시정조치를 위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자동차 제작·수입자가 체계적인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계획서에 시정조치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개선</li> </ul> <p>③ <b>시정조치 등의 진행상황 보고의무 개선 (안 제42조제3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별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상 차량이 폐차·수출 등으로 실질적으로 시정조치 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보고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정 개선</li> <li>-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상황이 90퍼센트에 도달할 때까지 매 분기별 보고를 하도록 규제 완화</li> </ul>	<p>2022-08-29</p>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④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의 의무사항 규정 (안 제155조제1항, 제2항, 제3항 신설)</p> <p>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대해 모니터링 결과 통보, 조사 및 조치 요구 권한을 부여 (안 제15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p> <p>※ 의견 제시기간 :8/29(월)~10/11(화)까지 <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a>로 제출</p>	
중소벤처기업부	<p>• <b>「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p> <p>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의 법적 기반 마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소상공인 용자 대출금의 부실채권 매각 상대처 신설 (안 제10조의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채권의 효율적 회수와 관리를 위해 매각하고자 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외 유동화 전문회사, 기업 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기관 등으로 규정함</li> </ul> <p>※ 의견 제시기간 :8/29(월)~9/19(월)까지 <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a>로 제출</p>	2022-08-29
금융위원회	<p>• <b>「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b></p> <p>최근 금융의 부문간 연계성이 심화되면서 특정 부문의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시스템 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위기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확보 등이 필요한 금융회사를 지원하는 사전적·예방적 지원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금융안정계정의 설치 (안 제24조의5)</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등에 사용함</li> </ul>	2022-08-3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② 자금지원의 결정 등 (안 제39조의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다수 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등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li> <li>-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안정계정의 재원으로 부보금융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음</li> </ul> <p>③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안 제39조의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 등의 자금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부실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인지 여부, 자금지원의 필요성, 경영건전성 제고계획의 내용 등을 심사하여야 함</li> </ul> <p>④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안 제39조의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회사는 자금지원 이외에 유동성 또는 자본확충 등 재무상황 개선방안, 경영건전성 제고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기간 등을 포함한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제출하여야 함</li> </ul> <p>⑤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점검 (안 제39조의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지원을 받은 부보금융회사 등은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점검하여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li> <li>- 금융감독원장은 예금보험공사에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상황 및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li> </ul> <p>※ 의견 제시기간 :8/25(목)~10/4(화)까지 <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과)</a>로 제출</p>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 <b>「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4인)」</b></p> <p>자율주행 로봇은 미래 배송산업의 핵심으로서 순찰, 방역, 청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되는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정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p> <p>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만을 규정하고 있어 자율주행 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으로 자율주행 로봇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p> <p>이에 <b>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촬영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정하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규정함 (안 제2조제7호의2, 제25조의2 등)</b></p>	2022-08-30
정무위원회	<p>• <b>「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b></p> <p>일반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설립조건을 적용받는 저축은행업계에서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음. 이에 저축은행마다 제각각인 내부통제 역량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자율검사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p> <p>은행업은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지방은행은 자본금 250억원 이상이 인가 조건인 데 반해, 저축은행은 본점이 특별시에 있는 경우 자본금 120억원, 광역시에 있는 경우 80억원, 특별자치시 등에 있는 경우 40억원으로 설립이 가능함</p> <p>이에 <b>현재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회원사의 건전경영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저축은행중앙회에 금융감독원이 특정 부문에 대한 검사를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축은행업계의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b></p> <p>또한, 저축은행중앙회는 중소형 회원사 지원과 업계의 재무적 효율성 달성을 목적으로 공동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중앙회의 법적 역할로 명확히 정해 사업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한편, 소형 저축은행의 전산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p> <p>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금융감독원 업무의 절차적 완결성을 보강함 (안 제23조, 제25조의2)</p>	2022-08-31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 <b>「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b></p> <p>현행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은 막대한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 스타트업·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등 모험적 투자를 가능케 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도된 규제완화이지만 제도 도입 당시 각종 제한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규제완화 효과가 미미한 상황임. 또한, 과태료 조항으로 규제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까지 추가되어 다른 벤처투자 분야의 형벌 규정과 형평성이 맞지 않을뿐더러, 대기업이 CVC를 설립하는데 심리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p> <p>이에 중소기업창업투자 및 신기술 사업금융회사가 투자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외부자금 조달을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40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해외투자 제한을 투자조합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p> <p>또한, 이에 대한 과태료 조항 외 벌칙 규정을 삭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 CVC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안 제20조제3항제4호가목 및 제5호라목, 제124조제1항제6호 삭제)</p>	2022-08-31
기획재정위원회	<p>• <b>「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b></p> <p>매년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직전연도의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만을 곱한 값으로 정하던 것을, 다른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주류 출고가격의 변동, 주류의 가격안정 등 보다 다양한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의 50퍼센트에서 150퍼센트의 한도에서 결정하는 ‘가격변동지수’를 산정하여 직전연도의 세율에 곱한 값을 세율로 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탁주와 맥주의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p> <p>※ 동 법률안은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 필요</p>	2022-09-01
기획재정위원회	<p>• <b>「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b></p> <p>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추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기업 과세를 개선하는 한편,</p> <p>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중간예납 의무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 개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p>	2022-09-0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안 제2조, 제76조의8, 제76조의9, 제76조의11, 제76조의 12, 제76조의14, 제76조의18 및 제76조의19)</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과 결손금을 통 산하여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를 모회사가 완전 지배하는 자법인에서 모회사가 90퍼센트 이 상 지배하는 자법인으로 확대함</li> </ul> <p>② <b>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안 제13조, 제45조, 제46조의4, 제76조의13 및 제91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연도 소득의 100퍼센트까지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외의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이 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함</li> </ul> <p>③ <b>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안 제18조의2 및 현행 제18조의3 삭제, 안 부칙 제15조제2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 산입률을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기 준으로 단순화하여, 출자비율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00퍼센트의 익금불산입률 을, 출자비율이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30퍼센트의 익금불산입률을, 그 밖의 경우 는 80퍼센트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함</li> <li>- 일반회사보다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던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여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li> </ul> <p>④ <b>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안 제18조의4 및 제57조제7항 신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법인이 10퍼센트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의 9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외국납 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외국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 액과의 이중과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함</li> </ul> <p>⑤ <b>접대비의 명칭 변경 (안 제25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대비의 사용목적이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접대비의 명칭을 업무 추진비로 변경함</li> </ul> <p>⑥ <b>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안 제32조 및 제42 조의3 신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계약과 관련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시행에 맞추어 보험회사의 책임 준비금에 대한 손익의 귀속을 명확히 하고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회사의 급격한</li> </ul>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첫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익은 4년간 거치 후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p> <p>⑦ <b>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안 제55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00억원 이하’와 ‘200억원 초과’로 단순화하고, 200억원 이하 구간은 20퍼센트의 세율을, 200억원 초과 구간은 22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li> </ul> <p>⑧ <b>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안 제63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의 기준 세액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그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도모함</li> </ul> <p>⑨ <b>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 (안 제75조의7)</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을 확대하고 제출주기를 단축함에 따라,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종전 주기대로 제출하는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li> <li>- 상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li> <li>-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li> </ul> <p>※ 동 법률안은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 필요</p>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p> <p>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141개국에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을 국내에 도입하여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p> <p>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따른 자료 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留保所得) 합산과 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주식 등의 매각손익은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범위 확대 (안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의 제출의무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도 면제함</li> </ul> <p>②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합리화 (안 제28조제3호 및 제29조제2항제2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지주회사가 ‘사업연도 중’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사업연도 말 현재’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li> <li>*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li> <li>-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주식·채권의 매각손익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수동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li> <li>* 수동소득 : 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한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는 등의 사유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대상이 되는 소득으로서 주식·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나 투자신탁·기금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그 소득과 관련된 일정 자산의 매각손익(「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li> </ul> <p>③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등의 자료 제출의무 명확화 (안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해외현지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현지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해 해당</li> </ul>	2022-09-01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등 자료의 제출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p> <p>④ <b>글로벌최저한세의 도입 (안 제60조 및 제63조 신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고 소득에 대하여 적정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은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계산한 추가세액의 배분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하도록 함</li> </ul> <p>⑤ <b>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 (안 제62조 신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최저한세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에 대한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각각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li> <li>- 정책목적상 일반적으로 면세되는 정부기관 · 국제기구 · 비영리기구 등에 대해서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li> </ul> <p>⑥ <b>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실효세율 (안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신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사업연도에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 미만인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국가별 실효세율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함</li> <li>-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조정대상조세는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중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에 총이연법인세 조정금액 등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하도록 함</li> <li>-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그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에서 글로벌최저한세결산 금액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며, 계산한 금액이 영(零)이거나 음수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함</li> </ul> <p>⑦ <b>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안 제70조 및 제71조 신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은 최저한세율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에 초과이익 금액을 곱한 후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더하고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함</li> <li>- 각 사업연도 해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에 각 사업연도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을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li> </ul>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⑧ <b>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의 과세 (안 제72조 및 제73조 신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인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여 모기업에 과세하는 소득산입규칙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li> <li>- 소득산입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은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해당 모기업에 귀속되는 비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등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이익에 대한 모기업의 지분에 비례하여 모기업이 추가세액을 부담하도록 함</li> <li>- 최종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추가세액배분액이 해당 최종모기업에 우선 과세되고, 최종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등 최종모기업에 추가세액배분액을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모기업이 부담하되,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경우 그가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하여 그 추가세액을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함</li> <li>-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한 추가세액배분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에 과세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하도록 함</li> </ul> <p>⑨ <b>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특례 (안 제74조부터 제82조까지 신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국가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평균이 1천만유로 미만인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세액을 영으로 하여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적용에서 제외하고,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자펀드·부동산투자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따로 투자구성기업들에 대한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등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특례를 정함</li> </ul> <p>⑩ <b>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 및 납부 등 (안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 신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구성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에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라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함</li> <li>-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경정하도록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추가세액배분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li> </ul>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⑪ <b>혼성금융상품 거래 자료 제출의무의 불이행 관련 과태료 (안 제88조 신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품별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li> </ul> <p>* 혼성금융상품 :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p> <p>※ 동 법률안은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 필요</p>	
<p>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p>	<p>• <b>「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등 10인)」</b></p> <p>미디어시장의 변화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미디어 등 콘텐츠의 유통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음</p> <p>또한, 광고주는 광고효과의 제고를 위하여 기존 방송과 인터넷, 모바일 매체 등의 다중매체를 결합하여 광고하는 크로스미디어 광고를 집행하고자 하고 있으며, 광고시장의 흐름 역시 온라인광고의 매출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반면에, 방송광고 수익은 해마다 급감하고 있음</p> <p>현행법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크로스미디어 광고 집행이 불가능한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p> <p>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는 방송의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한 방송사의 방송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지역·중소방송사를 위한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광고주 유치, 온라인·모바일 광고시장의 새로운 질서 마련을 위해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함</p> <p>이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광고판매의 경쟁력을 높이며 미디어광고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1호)</p>	<p>2022-08-26</p>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 <b>「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7인)」</b></p> <p>2021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025년에 20.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국제연합(UN)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후에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어 노령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p> <p>이에 따라 만성질환자 수와 진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건 의료 체계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의료패러다임의 중심을 진단·치료에서 예방·관리 그리고 모니터링의 강화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p> <p>이러한 배경 하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통칭 되는 스마트헬스케어 분야는 미래의 유망 신산업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큰 분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스마트헬스케어와 관련한 원천기술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해외진출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p> <p>이에 스마트헬스케어기술의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부가 스마트헬스케어기술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li> <li>②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스마트헬스케어기술정책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8조)</li> <li>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스마트헬스케어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및 제11조)</li> <li>④ 스마트헬스케어기술의 역량을 높이고 국내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소프트웨어의 시험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디지털의료소프트웨어 시험평가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 (안 제14조)</li> </ol>	08-3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 <b>「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1인)」</b></p> <p>현행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p> <p>그런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는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이 자체 평가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체 평가결과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는데 그쳐 이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p> <p>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기관은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안 제43조제4항 신설 등)</p>	2022-08-31
	<p>• <b>「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0인)」</b></p> <p>스마트폰은 2009년 한국 시장에 출시된 이래 우리 일상생활을 모두 모바일 중심으로 바꾸었고, 이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 됨</p> <p>스마트폰은 이동통신단말장치-운영체제-앱마켓-응용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으로 이어지는 모바일 생태계에 충성고객이 주로 발생하고 있어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사이에 거래상 지위가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p> <p>특히 이동통신단말장치 시장은 스마트폰 이전에는 많은 제조사가 경쟁하던 시장이었으나, 현재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 애플, 샤오미 등 소수의 대형 제조사 중심으로 재편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짐</p> <p>이러한 시장 상황하에서, 특정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새로 출시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이동통신사업자의 비용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를 집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되었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이 이루어졌음에도 제대로 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p> <p>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는 결국 국민의 통신비용으로 다시 전가됨으로써 통신기본권 보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p>	2022-09-01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광고비 등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3항 신설)</p> <p>•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허은아의원 등 12인)」</p> <p>현실의 물리적 서비스와 연동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가상의 공간인 메타버스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차세대 산업을 주도할 새로운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음</p> <p>그러나 메타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메타버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p> <p>이에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메타버스 서비스의 안정적인 이용 기반을 조성하고 차세대 산업 분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이 법은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메타버스 서비스의 안정적인 이용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li> <li>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의 활성화 및 안정적 이용을 위하여 메타버스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안 제4조)</li> <li>③ 메타버스의 활성화 및 메타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메타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5조)</li> <li>④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이나 메타버스 인증서비스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에서 재화, 용역 또는 서비스의 거래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안 제6조 및 제7조)</li> <li>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메타버스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존 서비스 등을 메타버스로 전환한 기업들 중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li> <li>⑥ 메타버스 관련 분야 종사자는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메타버스 서비스, 메타버스 인증서비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의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li> </ol>	<p>2022-09-01</p>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도록 하며, 메타버스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및 제17조)</p> <p>⑧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메타버스 접속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안 제19조)</p> <p>⑨ 정부는 메타버스에서 메타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메타버스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 및 제22조)</p> <p>⑩ 메타버스 사업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아바타 및 보유 가상자산 등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함 (안 제24조)</p>	
<p>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p>	<p>• <b>「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등 10인)」</b></p> <p>정부는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수립하고, 위 목표 달성을 위한 110대 국정과제로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등의 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p> <p>특히, 새정부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발표 시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자생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체 브랜드 확립 등 기업 본연의 가치 향상과 제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광고비 지원과 같이 중소기업·벤처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광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됨</p> <p>이에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경영기반 확충을 위한 광고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광고에 관한 전문성과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여러 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활용하여 <b>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광고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59조의2 및 제67조제1항제16호의2 신설)</b></p>	<p>2022-08-26</p>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 <b>「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2인)」</b></p> <p>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은 미래 먹거리 신산업 시장의 핵심 분야로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 안보적인 접근과 함께 파격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각종 규제로 인해 신속한 투자와 시설의 확대 등이 지연되며 일자리 창출, 경제발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p> <p>특히, 업계의 공장 신·증설이나 천문학적 투자 계획 발표, 연구개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은 주 52시간제 및 예비타당성조사 완화 등 규제개선의 필요성 등을 부각시키고 있어도 관련 대책은 부족하여 전략산업의 경쟁력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게다가 국가적 차원의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미흡하여 첨단전략산업의 현실과 미래가 불투명해 혁신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p> <p>이에 반도체 등 전략기술 관련 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와 주 52시간제에 대한 개선,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인재양성 등을 통해 반도체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산업의 선도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23조의2 신설, 제27조제1항 및 제35조 등)</p>	2022-08-31
	<p>• <b>「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b></p> <p>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의 운영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산업기반시설 등은 전기공급시설, 용수공급시설, 폐수처리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등이 있음</p> <p>이러한 산업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기업이 조성하기보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특화단지를 운영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일 것임</p> <p>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제1항)</p>	2022-08-3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p>• <b>「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의자의원 등 11인)」</b></p> <p>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전속성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p> <p>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하여는 자신이 노무를 제공한 모든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수에 따라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가 산정됨. 사실상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내용 및 보수가 공공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것임</p> <p>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별로 각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일한 내용의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다수의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실시하는 유사한 내용의 안전보건교육을 중복하여 받고 있는 실정임</p> <p>예를 들면 이륜차를 이용하여 음식배달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다수의 플랫폼에 언제든지 등록을 할 수 있고 사실상 동일한 내용과 형태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등록된 다수의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각각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중복하여 받아야 함</p> <p>이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안전보건교육을 중복하여 받음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p> <p>이에 동일한 유형의 노무를 제공받는 다른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후 이를 증명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 중복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플랫폼 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p> <p>또한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에 안전보건교육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교육 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후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추가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p> <p>아울러 현재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방법이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규정되어 있고 인터넷 원격교육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음</p> <p>이에 원격교육의 방법을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교육으로 확대하되 주행 중 원격교육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플랫폼 종사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p>	2022-08-3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동일한 유형의 노무를 제공받는 다른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을 받거나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교육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후 이를 증명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하여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봄 (안 제77조제3항 신설)</p> <p>②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방법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원격교육을 포함하며, 주행 중 원격교육 방지 등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안 제7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p>	
	<p>• <b>「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3인)」</b></p> <p>현행법령의 해석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용기에 잔량이 소량 남아 있는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및 관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p> <p>그러나 실제로 해당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로 처리·관리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에 따라 처리 및 관리를 할 경우 인허가·법정교육·보관시설·검사 등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보관·취급장소·시설 등의 보관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p> <p>또한,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이라면 예외없이 지역주민에게 물질의 유해성 및 사고 위험성 등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지의 방법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등록과 함께 서면통지, 개별설명 또는 집합설명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p> <p>그러나 이와 같은 일률적인 적용은 해당 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불필요한 고지절차로 주민불안감만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p> <p>이에 유해화학물질 중 사업장에서 재사용할 목적이 아니며 용기에 남아 있는 상태 및 잔존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이라도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주민이나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고 주변 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1항제15호 및 제23조의3제2항 단서 신설)</p>	2022-08-31

###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	아래【별첨1】참조		
국회도서관	9/5(월)	「팩트북」 통권 제96호 발간 - 지역 균형 발전	
	9/6(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3호 발간 - 영국의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입법례	
	9/6(화)	「현안, 외국에선?」 제43호 발간 - 중국의 「대만백서」 발간과 동아시아 외교·안보	
예산정책처	9/5(월)	「NABO Focus」 제51호 발간 - 「2020~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에 근거한 재정 준칙 도입의 영향 분석	
입법조사처	9/8(목)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발간	

### 【별첨1】 제399회 국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법사위	9/5(월) 10:00	인사청문회	검찰총장후보자(이원석) 인사청문회
산자위	9/5(월) 10:00	산업통상자원 특허소위	법률안 심의
	9/5(월) 10:00	중소벤처기업소위	법률안 심의
	9/7(수) 10:00	전체회의	법률안 의결
국토위	9/5(월) 10:00	전체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
	9/6(화) 10:00	예·결산심사소위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9/6(화) 소위 산회후	전체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 의결
예결위	9/5(월) 10:00	전체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별심사)

####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9/5(월) 14:00	인구전략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전주혜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
9/5(월) 14:00	메타버스를 활용한 직업훈련 전망 - 가능성과 한계 국회세미나	임이자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9/5(월) 14:00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진성준, 최인호, 김병욱, 박상혁 의원실	메이필드 호텔
9/5(월) 14:00	2022 스마트모듈러 국회포럼 - 모듈러 건축 활성화와 인센티브 제도	허영 의원실, 스마트모듈러포럼	국회도서관 강당
9/6(화) 09:30	2022 국가 R&D 정책 포럼 - 기초연구 강화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한계를 극복 하라	조승래 의원실, 기초연구연합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
9/6(화) 10:00	글로벌 미디어환경, 국내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송 규제개혁 방안 정책토론회	홍석준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9/6(화) 10:00	신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방안	이철규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
9/6(화) 14:00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체제 구축을 위한 긴급토론회	조승래 의원실	의원회관 10간담회실
9/7(수) 10:30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 론회	강득구 의원실, 경기도	국회도서관 강당
9/7(수) 14:00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 세미나 -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장경태 의원실, 국회공정사회포럼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9/7(수) 14:00	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김종민, 소병철, 신동근, 홍영표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9/7(수) 14:00	해외 각국의 현지 법령정보 플랫폼 구축방안 - K-콘텐츠 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은?	배현진 의원실	국회체험관 대강당
9/7(수) 15:00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공청회	황운하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9/7(수) 16:00	양의원영의 연속정책대담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개편 방향	양의원영 의원실	양의원영 TV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50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8/30(화)	<a href="#">「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호 발간</a> - 의사조력사망 제도 관련 해외 입법례	
입법조사처	8/29(월)	<a href="#">「NABO 재정동향 &amp; 이슈」</a>	
	8/31(수)	<a href="#">「NABO 경제동향」 8월호 발간</a>	

###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8/29(월) 10:00	<a href="#">금융 혁신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 쟁점과 과제</a> - 금산분리 완화와 금융판 BTS	윤상현 의원실, 한국경제TV	도서관 소회의실
8/29(월) 10:00	<a href="#">온투법 시행 2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평가와 발전방향</a>	윤창현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8/29(월) 10:00	<a href="#">'분양원가 공개와 서민주거안정' 토론회</a>	서범수 의원실, SH공사	의원회관 2세미나실
8/29(월) 14:00	<a href="#">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a>	최재형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8/31(수) 10:30	<a href="#">메타버스 내 성범죄 실태와 대책은?</a>	신영현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8/31(수) 13:30	<a href="#">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토론회</a> - 탈석탄 주요 갈등 쟁점과 사회적 비용 과제는	국회기후변화포럼 유의동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8/31(수) 14:00	<a href="#">금산분리의 법·경제적 이슈와 정책방향</a>	이용우, 민병덕, 오기형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9/1(목) 10:00	<a href="#">ICT 혁명시대 공영방송의 가치 재정립과 공적 책무 이행 방안</a>	윤두현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9/1(목) 15:00	<a href="#">디지털시대, 공간정보를 활용한 건설산업 발전 방안</a>	김민기, 김정재, 최인호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나인선** |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최유리** | 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성재열** |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김은혜** |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